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6조의9제1항제1호).
-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 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다만, 환경부장관의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근거인 현행법 제32조 제4항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안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특별관리지역 및 토지 매수 사업 현황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음(제32조제4항).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년 10월 기준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① 익산 왕궁 정착농원과 ② 김제 용지 정착농원 두 곳임²⁾.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축사 매입이 완료되어 생태복원이 추진 중이나,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축사 매입 대상 농가의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김제 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을 완료하고자 하는 취지임.

□ 관련 부처 의견

기획재정부는 유효기간의 연장은 특별관리지역(김제) 토지등 매수를 위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수반하는바,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임.

구체적으로, ① 정부는 김제시가 추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당초 요구한 총사업비 481억원의 국비를 전액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② 동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의 경우 예산 부족분을 지방비로 충당하여 축사 매입을 완료하였는바,

2) 【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 】

구분	위치	지정면적(㎡)	지정기간
익산 왕궁 정착농원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온수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790,384㎡ (2,205필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김제 용지 정착농원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신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176,746㎡ (1,744필지)	

※ 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308호) 검토보고」, 2024. 8.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③ 기간 연장 및 추가 예산편성시 총사업비가 500억을 초과하게 되어 「국가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³⁾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환경부는 추가 국비 지원은 하지 않되, 현재 추진 중인 매입지 생태복원 사업 등이 2025년까지 계속됨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